

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18 호

국회 사무처

2016년12월9일(금) 오후 3시

의사일정

-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상정된 안건

-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종인·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현·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세제·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석현·이언주·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웅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명길·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익표·황희·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김종대·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김용태·김중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홍의락 의원 발의) … 1

(15시02분 개의)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종인·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승조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상민 · 이석현 · 이언주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채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웅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명길 · 최윤열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익표 · 황희 · 권은희 · 김경진 · 김관영 · 김광수 · 김동철 ·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종희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손금주 · 송기석 · 신용현 · 안철수 · 오세정 · 유성엽 · 윤영일 · 이동섭 · 이상돈 · 이용주 · 이용호 · 이태규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 정인화 · 조배숙 · 주승용 · 채이배 · 천정배 · 최경환(국) · 최도자 · 황주홍 · 김종대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 추혜선 · 김용태 · 김종훈 · 서영교 · 윤종오 · 이찬열 · 홍의락 의원 발의)

(15시0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

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에 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평등원칙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중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 등에 금품 출연을 강

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를 저버리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였으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특히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서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9시경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하여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갖고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 여러 그룹으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업들 모금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체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과정,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 계약을 맺고 수주를 받도록 하는 과정,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과정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고 광고제작비를 수수하는 과정,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더블루케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납부한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하였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정호성에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헌법 위반의 점과 법률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에서 말씀드린 박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

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금융·문화·산업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사용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공무원들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습니다.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 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로써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따른 탄핵 결정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입니다. 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쉬는 것을 보여 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회 앞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탄핵 가결을 통해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미 위대하신 국민들께서 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의석단말기의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정유섭 의원, 정태욱 의원, 조훈현 의원, 박주민 의원, 오영훈 의원, 전재수 의원, 채이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직접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24분 투표개시)

○의장 정세균 지금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마쳐진 것 같습니다.

(15시5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앓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혼

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 의원(300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중명	이중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욱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철호	홍의락 황영철	홍익표 황주홍	홍일표 황희	유의동 유소하	유재중 유영석	윤관석 윤영일	윤상직 윤재욱
○개회 시 재석 의원(284인)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찬열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이태규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전현희	전희경	정동영	정병국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훈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정재호	정진석	정춘숙	정태욱
김종태	김종희	김종훈	김중로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노웅래	노희찬	도종환	문미옥	최경환(국)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산회 시 재석 의원(284인)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양승조	여기구	엄용수	여상규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민봉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중태 김중회 김중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중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욱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 최고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우윤근
 입법차장 진정구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

○의안 제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주광덕·장석춘·김선동·성일종·
 김상훈·강석진·정운천·추경호·문진국·
 김성찬 의원 발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민기·강창일·김상희·김정우·
 김철민·김현미·박홍근·안규백·안민석·
 윤관석·조승래 의원 발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백혜련·황희·홍익표·이원욱·
 김영진·유동수·이훈·이학영·안규백·
 이종걸·우원식·김현권·서영교·어기구·
 양승조·박광온·정성호·김경협·권미혁·
 김종훈·한정애·이재정 의원 발의)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이원욱·황희·김영진·김경수·
 권철승·김민기·홍익표·김병관·최명길·
 전현희 의원 발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우상호·이훈·기동민·김한정·
 이재정·박완주·문미옥·유동수·백혜련·
 강병원·박정 의원 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
 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

이은재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노웅래·정동영·전혜숙·이개호·
안민석·유승희·도종환·전재수·유은혜·
주승용·장정숙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8. 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
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
이은재 의원 발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혜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
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김수민·
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백재현·황주홍·강창일·안규백·
김혜영·김정우·박남춘·정성호·이재정·
김수민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8. 백재현·정성호·소병훈·강창일·
서영교·전혜숙·장병완·이재정·김수민·
김정우·표창원 의원 발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8. 엄용수·박명재·박덕흠·윤한홍·
윤종필·성일중·곽대훈·정종섭·이종명·
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엄용수·박명재·박덕흠·윤한홍·
문진국·윤종필·이학재·백승주·성일중·
홍일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8. 박인숙·홍영표·이종명·신상진·
이태규·신보라·이현재·황주홍·이명수·
최도자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박선숙·장정숙·노웅래·김현권·
채이배·김관영·신용현·김삼화·인재근·
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병욱·강훈식·김경협·박정·
어기구·윤후덕·이상민·이찬열·임종성·
정춘숙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정종섭·곽상도·유민봉·정성호·
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
엄용수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광수·이용호·김관영·김종희·
조배숙·최도자·김삼화·장정숙·정동영·
유성엽 의원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8. 박용진·김혜영·민병두·박찬대·
제윤경·최명길·강병원·김관영·손혜원·
박광온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박선숙·박정·장정숙·노웅래·
김현권·채이배·유승희·김관영·신용현·
김삼화·인재근·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
표발의)

(2016. 12. 8. 백재현·김상희·정성호·강창일·
표창원·김혜영·김영춘·이언주·황주홍·
이재정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이우현·이완영·염동열·조경태·
민홍철·김성원·김상희·함진규·강훈식·
윤관석·박덕흠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중로·황주홍·김삼화·최도자·
이용주·김종희·김종대·김광수·장정숙·
권은희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병기·권칠승·김중로·문미옥·
서영교·송기현·신경민·신창현·양승조·
윤호중·진선미·표창원·홍익표·김종대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박성중·송희경·윤상현·이채익·정용기·홍철호 의원 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영주·김병관·최인호·전해철·윤관석·윤호중·신창현·이학영·김해영·박찬대·정재호·제윤경·최운열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엄용수·박명재·박덕흠·김정훈·윤한홍·윤종필·곽대훈·정중섭·이종명·박성중·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신경민·박남춘·김정우·인재근·민병두·박홍근·권철승·윤관석·이찬열·김해영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박성중·윤상현·이채익·이현재·이우현·홍철호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박홍근·위성곤·설훈·손혜원·오영훈·김해영·박광운·이춘석·이종걸·문미옥·정재호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신경민·박남춘·김상희·김정우·인재근·민병두·박홍근·권철승·윤관석·남인순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이석현·설훈·김태년·박광운·박정·소병훈·정춘숙·김영진·김민기·임종성·김해영·권철승·어기구·신동근·박남춘·이철희·김성수·신경민·문미옥·김경수·안호영·송옥주·홍영표·유은혜·김종민·이인영·조웅천·최인호·박찬대·김한정·김두관·김영호·한정애·민홍철·최운열·변재일·조승래·박재호·유동수·

정재호·박홍근·김병기·이용득·전현희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8. 정부 제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병기·권철승·김종대·김중로·문미옥·서영교·송기현·신경민·신창현·양승조·윤호중·진선미·표창원·홍익표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신경민·윤종오·우원식·권철승·박광운·김수민·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서영교·윤소하·백혜련·서형수·김상희·박주민·김성수·소병훈·황주홍·박재호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박인숙·이완영·김성태·김성원·김세연·송희경·이군현·이철우·이현재·이명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인재근·소병훈·유은혜·기동민·박남춘·김영진·우원식·윤소하·이인영·윤관석·신경민·문미옥·이철희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한선교·김석기·김선동·김순례·김태흠·김학용·염동열·윤재옥·이우현·이은재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8. 한선교·김석기·김선동·박인숙·
염동열·윤재욱·윤종필·이우현·이은재·
이종배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중섭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8. 정중섭·유민봉·金成泰·정성호·
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
엄용수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이동섭·장정숙·김광수·김해영·
박선숙·정인화·이원욱·장병완·신경민·
황주홍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희·김관영·김해영·정인화·이원욱·
장병완·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희·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신경민·박정·이찬열·박광운·
권칠승·인재근·김해영·이훈·정재호·
유승희·김성수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희·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희·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희·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박홍근·문미옥·변재일·김해영·
박광운·위성곤·이해찬·이춘석·이종걸·
설훈·정재호 의원 발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송석준·김학용·송희경·정성호·
김상훈·박준영·윤종필·박인숙·김순례·
추경호·김승희·윤소하 의원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박홍근·심재권·김해영·박광운·
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백재현·
정재호 의원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희·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
김종희·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
윤후덕 의원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박홍근·심재권·김해영·박광운·
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백재현·
정재호 의원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
윤후덕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
윤후덕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8. 박홍근·심재권·김혜영·박광온·
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백재현·
정재호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
김현권·김현미·노웅래·박남춘·손혜원·
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8. 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
박성중·윤상현·이우현·이채익·최교일·
홍철호 의원 발의)

이상 6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원 제출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2016. 12. 8. 장정민 외 1,001인으로부터
안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제347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	2016년 12월 12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각종 민생법안 등 안건처리
요 구 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외 162인

(2016. 12. 9.)